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## [여의교 확장공사]

- 점검일시 : 2018.03.19 (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한종수,홍민철

<p>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</p> <p>- 신설교량에 설치한 임시계단은 난간이 미설치되는 등 전도위험이 있으니 보완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(작업발판 및 계단), 공통-3(가설경사로)</p>	
<p>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</p> <p>- 신설교량 끝단부에 설치한 추락방지시설(안전난간)은 아래 사항을 보완하기 바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발끝막이판 설치</li> <li>② 기둥 고정</li> </ul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조건)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1(안전난간)</p>	
<p>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</p> <p>- 교량 하부에 설치한 가설계단은 아래사항을 보완하기 바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2점이상 고정</li> <li>② 안전난간 설치</li> </ul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(작업발판 및 계단)</p>	

○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(토목부)

- 낙하물 방지공 철거시 자재 낙하 및 작업자 추락 위험이 높으므로 안전한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,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기술지원감리원 검토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관리관에게 통보하고 관계근로자들에게 교육 실시 후 작업하기 바람

